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59
----------	------

제출연월일 : 2017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발생 등 교육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정규모의 학교 설립 요구
- 나. 교육공간기획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도시공간 개선사업과 학교시설 개선 사업의 연계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다.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미래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공간 디자인혁신 추진체계 마련

2. 주요내용

- 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공간 기획·추진에 관한 사무를 교육행정국 소관 사무로 명시 (안 제9조)
- 나. 교육공간기획 전담부서의 존속기간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2년으로 정함 (안 부칙)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별첨 3]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제10조
- 나. 예산조치
 - 1) 조례 시행 후 예산이체
 -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2) 입법예고(2017. 9. 16. ~ 10. 5.)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공간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9조제9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시기구의 존속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9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p>1. ~ 8. (생략)</p> <p><u><신 설></u></p>	<p>제9조(교육행정국) ----- -----</p> <p>1.~ 8. (현행과 같음)</p> <p><u>9.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공간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u></p>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부서 신설로 사무실 재배치 등 교체 비용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교육행정국에 한시기구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을 신설하기 위해 교육행정국장의 분장사무를 신설하고 부서의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부서 신설에 따른 사무실 배치 등의 교체 비용이 발생하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주무관 정광채(02-399-9356)

【별첨 3】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보조기관) ①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제8조(실·국 등 기구의 설치) ①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본청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국의 명칭과 사무 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